

의안번호	2217539
의 퇴 인	허영 의원
회 답 일	2026. 8. 6.
추계번호	26B16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정원·공동체정원 및 생활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제2항) 1. 국립정원소재센터: 정원소재 개발·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 지원 2. 국립정원문화원: 정원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정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이하 “정원도시”라 한다)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재량규정
3	안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외 국가와의 교류 및 우호증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조성목적과 정원규모,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 산림청장 및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에 조성된 정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제3항)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에게 한국정원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제4항) 산림청장 및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5항)	의무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 재량규정
4	안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항)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2항) 3.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정원 지원 관련 사업을 실시 중이며, 개정안은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 rowspan="2">생활권도시숲 조성(자율) (1942-303)</td><td>생활밀착형숲 조성(소읍지역) －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 등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도 상승</td><td>5,250</td></tr><tr><td>생활밀착형숲 조성(실내정원) － 공공시설 내 실내옥상정원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 정원문화 확산</td><td>5,925</td></tr></table>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생활권도시숲 조성(자율) (1942-303)	생활밀착형숲 조성(소읍지역) －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 등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도 상승	5,250	생활밀착형숲 조성(실내정원) － 공공시설 내 실내옥상정원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 정원문화 확산	5,925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생활권도시숲 조성(자율) (1942-303)	생활밀착형숲 조성(소읍지역) －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 등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활력도 상승	5,250										
생활밀착형숲 조성(실내정원) － 공공시설 내 실내옥상정원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친환경 정원문화 확산	5,925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2	안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정원소재센터는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국립정원문화원은 기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별도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1941-300)</td><td>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국립정원소재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td><td>57,202</td></tr><tr><td>정원도시 조성(자율) (1945-300)</td><td>지역특색이 담긴 정원기반 도시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소멸되고 있는 지방 도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td><td>8,747</td></tr><tr><td>정원도시 조성(세종) (1945-301)</td><td></td><td>500</td></tr></table>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1941-3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국립정원소재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	57,202	정원도시 조성(자율) (1945-300)	지역특색이 담긴 정원기반 도시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소멸되고 있는 지방 도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	8,747	정원도시 조성(세종) (1945-301)		500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1941-3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 국립정원소재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	57,202										
정원도시 조성(자율) (1945-300)	지역특색이 담긴 정원기반 도시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 등 소멸되고 있는 지방 도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원	8,747												
정원도시 조성(세종) (1945-301)		5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3	안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4	안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업무에 정원문화 활성화를 추가하고 있어 사업 범위 및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산림청에 따르면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개정안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산림청의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정원 운영 및 박람회 지원(자율)(1945-302)</td><td>국가정원 운영·관리 -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중인 순천만, 태화강 정원 운영 지원</td><td>4,000</td></tr> <tr> <td>정원박람회 지원 - 창업·경영지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술전수, 산업동향, 기업연계 및 사업상담 등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하기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td><td>3,000</td></tr> </tbody> </table>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정원 운영 및 박람회 지원(자율)(1945-302)	국가정원 운영·관리 -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중인 순천만, 태화강 정원 운영 지원	4,000	정원박람회 지원 - 창업·경영지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술전수, 산업동향, 기업연계 및 사업상담 등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하기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3,000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정원 운영 및 박람회 지원(자율)(1945-302)	국가정원 운영·관리 -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중인 순천만, 태화강 정원 운영 지원	4,000								
	정원박람회 지원 - 창업·경영지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술전수, 산업동향, 기업연계 및 사업상담 등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하기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3,000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이라 함)이 해외에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조성목적과 정원규모, 관리계획 등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산림

1)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장 및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은 해외에 조성된 정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면서 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장 및 한국정원 조성기관의 장이 해외에 조성된 정원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해외에 조성된 정원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 정원, 관리실태 점검 업무 위탁에 따른 지원의 내용·범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